

NCS지원센터 규정

제정 2015. 3. 31. 개정 2015. 8. 31.
개정 2015. 12. 18. 개정 2016. 3. 1.
개정 2016. 6. 23. 개정 2016. 10. 5.
 개정 2017. 5.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대경대학교 NCS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과과정과 훈련 매체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훈련 - 산업현장 - 자격’ 의 합일화를 도출함으로써 대경대학교만의 체계적 운영 시스템 활성화와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① NCS기반 교육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31.>
- ②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운영 지원 및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31., 2016.6.23.>
- ③ NCS기반 교재개발 및 학습매체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31.>
- ④ NCS기반 직무능력 평가 및 질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31.>
- ⑤ NCS기반 교육과정 컨설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31.>
- ⑥ 기타 NCS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31.>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① 본 센터는 교학처 산하기관으로서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8.31.>

② 센터에는 교원, 직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겸직할 수 있다.

③ 본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센터 내에 필요한 운영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6.23.>

제4조의2(업무) 센터의 운영업무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며, 각 운영 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NCS지원센터는 NCS 기반 교육과정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학처, 교수학습지원센터, 산학처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NCS지원센터는 NCS 기반 교육과정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관련 학칙, 규정 등의 정 및 개정을 위해 지원한다.

③ NCS지원센터 운영팀의 업무는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개발(개편)팀 :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핵심직무 도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 운영 팀 : NCS기반 교육과정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설계, 학습모듈, 교수학습지침서에 관한 사항 등

3. 평가 팀 : NCS기반 교육과정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및 교육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직업기초운영 팀 : NCS 직업기초 교양교과 지원에 따른 교양교과 개편 및 운영, 평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6.6.23.]

제5조(센터장) 센터장은 NCS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학과 중점교원) 학과별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평가, 질 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중점교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① 학과 중점교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학과 중점교원의 직급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3.1.]

제6조 본 센터의 인원 충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의2(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교내외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교외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31.]

제6조의3(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교학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8.]

제7조 삭제 <2015.8.31.>

제8조(연구원 및 상담원) 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상담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2인 내외의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1., 2016.10.5.>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5.8.31.>
4. 기타 센터장 및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8.3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15.8.31.>

제10조 삭제 <2015.8.31.>

제 4 장 재 정

제11조(재정) 본 센터의 재원은 본교로부터의 정규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예·결산) 본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예산·결산규정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본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5.8.31.>

제 5 장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평가 <신설 2015.12.18.>

제15조(목적) 본 규정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용어의 정의) ① “NCS 기반 교육과정” 이라 함은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학과별 인재양성유형 목표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② “NCS 개발 분야 교육과정 개발” 이라 함은 NCS가 개발되어 있는 분야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이라 함은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자체 직무분석 방법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④ “NCS 적용 교과목” 이라 함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중 NCS에서 제시된 능력단위(능력단위요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⑤ “NCS 미적용 교과목” 이라 함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중 자체 직무분석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자체 능력단위(능력단위요소)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말한다.

제17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대학교의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절차에 따라 도출된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8조(NCS 적용 교과목의 평가방법) ①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절차에 따라 도출된 교과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시 작성된 교과목 명세서에 제시된 평가방법에 준하여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학생에게 공지한다.

2. 평가계획서에는 진단평가와 직무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적절한 평가내용 및 방법을 기술한다.

3. 진단평가는 수업 전 혹은 수업 초기에 시행하는 학생별 자가진단평가로서, 수행준거에 따른 이해도를 평가하고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4. 교과목 평가방법은 <별표 1>에 제시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5. 직무능력평가는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 명세서에 제시된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와 지식/기술/태도/도구(K/S/A/T)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6. 직무능력평가 결과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학생별 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성취수준이 기준 미달인 학생에 대하여 별도로 마련된 향상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9조(NCS 적용 교과목의 성적평가) NCS 적용 교과목의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3.1.]

제2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규정, 학칙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1.]

제21조 삭제 <2016.6.23.>

제22조 삭제 <2016.6.23.>

제23조 삭제 <2016.6.23.>

제 7 장 NCS 기반 교육과정 교육품질 관리 <신설 2017.5.23.>

제24조(목적) NCS 기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대학 및 학과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검토사항) 자체평가 검토사항은 <별표 3>에 제시된 사항에 준한다.

제26조(결과물) NCS 기반 교육과정 자체평가에 대하여 다음의 결과 산출물을 도출한다.

1. NCS 기반 교과목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 학과 NCS 기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 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 방법	세부 내용
포트폴리오	자신이 작성하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
문제해결 시나리오	문제해결 능력의 획득을 두고 평가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
서술형 시험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대해 자유 형식으로 서술하게 하여 평가
논술형 시험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과정을 언어로 서술하게 하여 평가
사례연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성공이나 실패요인을 분석 적용하여 평가
평가자 질문	평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응답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평가자 체크리스트	많은 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평가 대상자의 과정이나 작업 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특정 주제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과정이나 작업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하도록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일지/저널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작업과정이나 학습결과를 기록하여 평가
역할연기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문제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속의 인물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보도록 평가
구두발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
작업장평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작업장 환경 등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
기타	위의 12가지 평가 유형을 제외한 모든 평가 방법

<별표 2>

판정 기준	성취 수준	수행정도	평가점수 (예시)
충족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90 ~ 100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80 ~ 89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70 ~ 79
미충족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60 ~ 69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9 이하

<별표 3> <신설 2017.5.23.>

학사지원체제							
검토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보완사항 및 기타 의견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SME를 포함한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선정된 능력단위들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교과목 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는가?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1)}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1)}						
	직무수행능력평가(교과목 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향상/심화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교육과정 정책	대학의 학사정책 및 제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직업교육 환경							
검토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보완사항 및 기타 의견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환경의 적절성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장비 및 도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교육성과							
검토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보완사항 및 기타 의견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신입생 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재학생 충원율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직무 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교육만족도							
검토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보완사항 및 기타 의견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재학생 만족도	재학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산업체 만족도	산업체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강의 평가	강의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1) * 해당 교과만 선택